

| | | |
|---|---|---|
| <p>원 훈 건강하고 바르며 창의적인 어린이</p> |  <p>배곧초록유치원 http://new.bggreen.kg.kr ☎ 교무실 364-6100</p> | <p>제 2020-101호 가정통신 (교무) 담당자: 김해미</p> |
|---|---|---|

배곧초록유치원 제 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 공고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배곧초록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중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퇴로 교육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지침 및 배곧초록유치원 규정 제 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 추가선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◆ 입후보 자격

- 본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등록일 현재 다른 유치원의 학부모위원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1의 공무원 결격 사유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◆ 선출 인원 : 학부모위원 2명

◆ 입후보 등록 기간 : 2020. 8. 24. (월) - 8. 28. (금) (12:00까지 유효)

◆ 입후보 등록 방법 : 입후보 등록서 제출 (2층 원무실 방문제출, 이메일제출 haemi6244@korea.kr)

◆ 선거 공보 기간 : 2020. 8. 18(화) - 8. 21(금)

**◆ 선거 방법 : 온라인투표시스템 k-vo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
(코로나-19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직접투표 취소)**

- ※ 추가 등록 입후보자가 1명 이내인 경우 입후보한 자는 무투표 당선됩니다.
- ※ 당선된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반영됩니다.
- ※ 운영위원회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(031-364-61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18일

배곧초록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
